

자 산 관 리 규 정

제 정 1999. 1. 2.
개 정 2000. 1. 1.
개 정 2001. 1.16.
개 정 2002. 3.11.
개 정 2003. 2.13.
개 정 2004. 1.16.
개 정 2006. 8. 7.
개 정 2008. 1.19.
개 정 2008. 12.4.
개 정 2008. 12.5.
개 정 2009.12.30.
개 정 2011. 4. 6.
개 정 2013. 1.31.
개 정 2016. 7.22.
개 정 2016.10.26.
개 정 2017. 5.19.
개 정 2018. 5.18.
개 정 2020.11.26.
개 정 2021. 6.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독원의 자산관리와 계약업무를 공정 타당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2.4., 2011.4.6.>

1. "자산"이라 함은 비유동자산 및 부외자산을 말한다.
2. "계약"이라 함은 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따른 계약과 감독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계약을 말한다.
3.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적격심사낙찰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의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추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5. "고시금액"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6.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7. "장기계속공사"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말한다.

8.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함은 공사 이외의 물품의 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그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감독원의 자산관리 및 계약업무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12.4.>

제4조(자산관리 및 계약업무 위임) ①원장은 자산관리 및 계약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업무를 위임하고 담당직을 지정한다.

②총무국장은 감독원 전체의 자산관리업무 및 이와 관련된 계약업무를 총괄(이하 "자산총괄담당"이라 한다)한다.

제2장 자산관리

제5조(물품수급관리계획의 수립) 자산총괄담당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매년 그 해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용부동산 취득 등) 업무용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임대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2(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①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 전액을 받은 다음에 이전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이라도 제8조에서 정한 부동산의 불용결정 및 원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부동산의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개정 2011.4.6.>

1. 매수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2. 매수인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제출한 경우

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나. 감독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미납잔여대금(할부이자 포함)에 지연손해금 청구 등의 비용 기타 실비보상액을 더한 금액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한 정액보상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다. 건설공제조합이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발행한 부지매입보증서

라.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발행한 주택건설부지 매입보증서 <개정 2020.11.26.>

[본조 신설 2000. 1. 1.]

제6조의3(임차부동산의 요건) ①임차부동산은 주변환경이 좋고 임차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3.2.13.>

1. 등기부상 하자가 없을 것
2.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을 것
3. 임차부동산중 토지와 건물이 각각 소유권의 귀속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건물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이용권을 가지고 있을 것
4. 제세공과금의 체납이 없을 것
5. 임차보증금(전세금)방식으로 임대하는 것(국내 임차사택에 한함)

②임차료는 인근지의 임대실례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2.13.>

③임차보증금(전세금)의 지급한도는 그 부동산시가의 70%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도를 각각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03.2.13.>

1. 지급보증보험 가입에 의한 권리보전방법으로 사택을 임차하거나 전세권 설정에 의한 권리보전방법으로 사택(아파트에 한함)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80% 이내
2. 임차에 적합한 다른 대상물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70%이내에서 임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시가 전액을 한도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보증금을 임차료로 환산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금에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통계표상의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로 한다. <2003. 2. 13. 종전③에서 항체하><개정 2008.1.19., 2020.11.26., 2021.6.1.>

⑤ 임차부동산의 권리보전 및 담보권 설정에 대하여는 자산총괄담당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3.2.13. 종전④에서 항체하>

[본조 신설 2000. 1. 1.]

제6조의4(임대) ①감독원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원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연간 임대료는 임대부동산 시가(대지제외)의 3%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4.6.>

1.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감독원 부동산을 사용할 때
2. 직원의 복지후생을 목적으로 대여할 때
3.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감독원 업무지원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여할 때

③ 감독원 소유 임대부동산은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자산총괄담당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 및 해지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임대부동산의 계약해지에 관하여는 자산총괄담당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 신설 2000. 1. 1.]

제6조의5(공관) ①원장, 지원장, 해외사무소장 및 해외주재원(실장)에게 공관을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02.3.11., 2016.10.26.>

② 원장공관을 제외한 공관의 형태는 아파트로 하며, 공관의 규모는 전용면적기준 115.8㎡(비광역시 지원장의 경우에는 「주택법」상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면적’이라 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관의 형태를 아파트이외로 하는 경우와 공관규모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2.3.11., 2016.10.26.>

③ 공관(원장공관 제외)을 임차하여 대여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3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④ 공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산총괄담당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 신설 2000. 1. 1.]

제6조의6(사택의 반환) ①사택 입주직원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택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총무국장이 계속 대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4., 2013.1.31.>

1. 복지규정 제21조에서 규정한 사택대여기간의 종료
2. 입주직원의 퇴직, 휴직(육아휴직 제외) 또는 다른 근무지 진출
3. 입주직원, 배우자 또는 동거가족 명의로 주택구입(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잔금지급일 중 이른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즉시”로 본다.)<개정 2006.8.7., 2017.5.19.>
4. 급여압류후 3개월 이상 경과
5. 복지규정 제36조의 제재조치에 의한 수혜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
6. 사택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신설 2013.1.31.>
7. 기타 사택대여 자격요건에 위배되는 경우

②사택을 대여받은 직원이 사택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중도해지 포함)로 인하여 계속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퇴거하고 동 사택을 반환(명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2.13.]

제6조의7(사택에 대한 감독원 비용부담) 임차사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은 감독원이 부담한다. 다만, 입주직원의 사정(공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에 의하여 임차 계약기간 만료전에 중도퇴거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감독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입주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6.8.7.>

1. 중개수수료
2. 권리보전관련 경비
3. 직원이 입주하고 있지 아니한 기간에 발생한 제반 관리비 등

[본조신설 2003.2.13.]

제7조(권리보존) 비유동자산의 권리보존을 위하여 그 자산의 관리담당은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등기·인증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제8조(비유동자산의 불용결정) ①비유동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유동자산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 2011.4.6.>

②불용결정의 대상은 훼손 또는 노후 등으로 수리 재사용이 곤란하거나 업무상 불필요하게 된 비유동자산으로 원칙적으로 그 내용년수가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재사용의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된 때는 내용년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1.1., 2011.4.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

1.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자산관리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장부가격(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구조·용도·규모 및 금액)
2. 구입(취득)일자 및 현재상태
3. 불용결정 사유
4. 처분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④불용결정한 비유동자산은 자산총괄담당에게 처분을 의뢰하거나 자산총괄담당의 승인을 얻어 매각, 소각 또는 폐기(부동산의 경우 철거), 증여, 교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

다. 다만, 불용결정한 물품(집기·비품) 처분의 경우 자산총괄담당의 승인을 생략하되, 그 처분결과를 자산총괄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 2008.12.5., 2011.4.6.>

제9조(관리보고) ①자산관리담당은 매년 6월 30일 현재의 자산상태를 파악하여 과부족 및 망실, 훼손, 성능저하 등 변동사항에 대한 관리보고서를 7월 31일까지 자산총괄담당에게, 자산총괄담당은 8월 31일까지 부원장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 <개정 2002.3.11.>

②자산관리담당은 물품의 사용자 또는 보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독원 자산을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감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0.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망실 또는 훼손물품의 변상기준에 관하여는 자산총괄담당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0.1.1.>

제10조(관리대장) ①비유동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거나 이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비유동자산의 취득, 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2.3.11., 2011.4.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4.6.>

1. 비유동자산총괄대장
2. 비유동자산대장(사용부서)
3. 비유동자산감가상각대장
4. 토지·건물의 도면
5. 기타 부속서류

제11조(부외자산) ①부외자산은 성질상 당연히 자산으로 취급되어야 하거나 자산으로 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산이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신설 2000.1.1.>

②부외자산은 동산중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비품, 소모품, 피복, 도서 및 기타의 동산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1.4.6.>

③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해 있는 임차자산, 담보자산, 국유자산 등은 부외자산에 준하여 관리한다.

④수익적지출에 의하여 비용처리된 자산으로서 사용후 반납된 것은 그 상태를 감안하여 재생후 재활용하거나 폐기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 <개정 2008.12.4.>

제12조(보험가입) ①비유동자산에 대하여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무형자산과 100만원 미만의 비유동자산(차량 제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6.>

②제1항의 금액은 미상각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예술품의 경우에는 감정가액(감정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부외자산에 대한 보험가입은 자산총괄담당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계약

제1절 통칙

제13조(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방법)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제74조, 제78조, 제89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쟁은 입찰의 방법으로 행한다. 다만,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매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7.22.>

제15조(예정가격의 작성)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항의 가격을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3.11., 2009.12.30.>

1.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89조 제6호, 제7호, 제7의2호, 제7의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 2016.10.26.>

3. 삭제 <2009.12.30.>

제16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7조(낙찰자 결정) ①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계약(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계약의 경우 그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3.11., 2016.7.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신설 2002.3.11.> <단서삭제 2011.4.6.>

④계약담당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등을 종합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은 당해 물품의 품질등의 평가기준을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2016.7.22.>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3.11.>

⑥계약담당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신설 2016.7.22.>

⑦제6항에 따른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2.>

제18조(계약서의 작성)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송낙서, 청구서, 각서, 협정서 등(이하 "송낙서 등"이라 한다) 계약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고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5., 2011.4.6.>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
2. 경매에 부칠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경우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할 경우
5.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할 경우
6. 인터넷구매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설 2002.3.11.>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류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5.>

1.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구매
2.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이고 물품 단위당 가격이 2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계약 즉시 납품되는 물품의 구매
3. 계약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용역계약

③ 예산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집행간부의 결재를 받아 체결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법률적 의견조회를 위하여 법무실장에게 합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실장의 합의를 거친 계약서로서 다른 계약내용의 변경없이 계약기간 또는 계약금액만이 변경되는 경우와 국가계약법이나 개별 규정에 의하여 정형화되어 있는 계약서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30.>

제19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공사이행보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11.26.>

②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본다.

③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예정가격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공사계약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5(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75) 이상을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2020.11.26.>

⑤계약보증금은 현금(「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가 발행하는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개정 2020.11.26.>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건축사업」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각각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개정 2002.3.11, 2011.4.6., 2016.7.22., 2020.11.26.>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채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에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⑥제4항의 규정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 ①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4.6.>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의 계약
2.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과의 계약
3. 삭제 <2011.4.6.>
4.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
5.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감독원과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고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또는 가격제한을 받고 기간경과후 3년이상인 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 대학의 교수 및 연구단체의 연구원등 저명인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설 2000.1.1.>

8. 이미 도입된 의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신설 2000.1.1.>

9. 제89조 제24호 규정에 따른 자회사와의 계약 <신설 2021.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승락서 등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보증금의 귀속) ①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감독원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여 감독원에 귀속시켜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을 감독원에 귀속함에 있어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과 상계처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감독원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6.7.22.>

③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감독원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101조 제3항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2차공사 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감독원에 귀속시킨다.

⑤제102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감독원에 귀속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7.22.>

제22조(감독 및 검사) ①계약담당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관련부서의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관련부서의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성전 또는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감독을 행하는 자의 검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검사 3회마다 1회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해야 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 또는 검사를 하

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 및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하게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7.22.>

④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물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단순유지보수 공사 및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하자보수점검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 또는 분할납품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개정 2002.3.11.>
2.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
3. 매각계약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하는 자 이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 계약의 이행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 계약의 경우
4.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개정 2016.7.22.>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을 위한 기성검사의 경우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설계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용역계약의 상대방이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했는지 여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⑧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공사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⑨계약담당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7.22.>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개정 2020.11.26.>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개정 2020.11.26.>

제23조(검사의 시기) ①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

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제24조(대가의 지급) ①공사, 제조, 구매,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검사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에 의거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검사전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9., 2008.12.4., 2011.4.6., 2020.11.26.>

1. 회계규정에 의한 선금과 개산금을 지급할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급의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제89조 제24호 규정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지급의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설 2021.6.1.>

②제1항의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1.19., 2011.4.6.>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실적 및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시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 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⑥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5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및 제5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신설 2008.1.19.>

제25조(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 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미지급액에 대하여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9.>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6조(대가의 선납) 재산의 매각, 임대, 용역의 제공, 기타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가의 선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4.6.>

1. 계약상대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지급보증인으로 하여 그 대가에 실비보상액을 가산한 정액이상의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89조 제24호 규정에 따른 자회사인 경우 <신설 2021.6.1.>

제27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기간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간
6. 기타 공사 1년

②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개정 2016.7.22.>
2. 단순암반 절취공사, 모래·자갈의 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2016.7.22.>

제2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징수) ①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 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곱

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 상하수도 구조물등 주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상하수도관로, 변전설비·일반건축공사 100분의 3
3. 배전설비·부지정지등 공사와 기타 공사 100분의 2

③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의 준공검사후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현금 또는 제19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보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6.>

1.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계약담당이 인정하는 공사
2.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신설 2016.7.22.>

⑤계약담당은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도록 하자보수보증금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면제) ①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 해당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면제는 계약상대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면하게 하지 아니한다.

제30조(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하자담보책임이 부과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때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접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감독원에 귀속된 것으로 보며 그 사용잔액의 처리는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2.4.>

제32조(하자보수의 점검) ①계약담당은 공사가 준공된 때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정기적으로 하자발생여부를 점검하거나 그 목적물의 실제관리 책임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하자보수를 점검할 경우에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상황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지체상금) ①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장기계속 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호의 1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7.22., 2020.11.26.>

1. 물품의 제조 및 구입(제68조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포함한다) 1천분의 0.75(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계약담당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1천분의 0.5)

2. 공사 1천분의 0.5

3. 물품의 수리 1천분의 1.25

4. 운송 및 보관 1천분의 2.5

5. 용역(제68조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1천분의 1.25

6. 가 공 1천분의 1.25

7. 대여 및 기타 1천분의 1.25

③지체상금을 산출함에 있어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제22조 제2항의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용역 또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6.10.26.>

④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6.7.22., 2020.11.26.>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보증금을 감독원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⑤이 조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3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0.11.26.>

제34조(지체상금의 납부면제)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5조(손해보험의 가입) 계약담당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공사계약 등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67조 제5항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6.7.22.>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67조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 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 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감독원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감독원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 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 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③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67조 제5항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제53조에서 정하는 율을 초과 할 수 없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조,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37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 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장기계속 공사·물품제 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 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이 있는 후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 한 날을 말한다)로 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다만, 「회계규정」 제86 조에 따라 청사관리용역 등의 계약을 회계연도 개시전에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이 완료된 후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9., 2011.4.6., 2016.7.22.>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 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 칩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개정 2008.1.19.>

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개정 2008.1.19.>

②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 결시 그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 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 가변동적용 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감독원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④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다.

* 공제금액 = 조정률×물가변동 적용대가×선금지급률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 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19.>

⑥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8.1.19., 개정 2016.7.22.>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야 할 경우로서 이를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08.1.19.>]

제38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경우에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5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상의 의무이행(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부기한 총공사의 이행을 말한다)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19조제4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 방법을 공사이행보증서 제출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17조 제6항, 제120조의 2(대형공사계약) 및 제120조의 3(기술제안 입찰공사)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2016.7.22>

②삭제 <2011.4.6.>

③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④계약담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공사이행 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보증이행업체"라 한다)가 그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계약금액중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⑤계약담당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6.>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0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괄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6.>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써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개정 2016.7.22.>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종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계약담당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2.>

제41조(경매) ①제1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제시하게 하고 최고신청액을 구술로 발표한 후 다른 최고가 신청인이 없을 때까지 신청을 받아 최고가격의 신청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의 경우 경매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격 제한기간에 있어서는 감독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제한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예정가격

제43조(예정가격의 비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이를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개할 수 있다.

제44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중 계속하여야 하는 공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임차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 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5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공

사, 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계약당당이 인정한 가격 <개정 2016.7.22.>

4. 제1호 및 제3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및 기타의 제반여건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예정가격의 체감) ①불용결정된 부동산 또는 물품등의 자산을 매각함에 있어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공고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당해 입찰에서 그 자산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5조에 의하여 결정된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새로운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신설 2002.3.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가격으로 제7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채공 고 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당해 입찰에서 그 자산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5조에 의하여 결정된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감액하여 새로운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신설 2002.3.11.>

제45조의3(매각위임)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함에 있어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당해 입찰에서 그 자산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기관에 매각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2.3.11.>

제46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계약당당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7조(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계약당당은 제4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가격에 의하되, 그 거래실례가격에 제48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4.6.>

1. 조달청장이 조사한 가격
2. 계약당당이 2인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3. 전문가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제4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구성) ①계약당당이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의 양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53조 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

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53조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수입물품 구매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 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보세화물 보험료 포함)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보험료 및 선박(항공)운임(F.O.B 가격인 경우)
6. 신용장개설 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제5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제5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계약담당은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7.22.>

제49조(원가계산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있어서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1.4.6.>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지정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정부의 관련부처가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그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계약담당은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동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처에 등록된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1.4.6.>

제50조(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6.7.22.>

제51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4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11.4.6.>

1. 감정가격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

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개정 2016.7.22., 2020.11.26.>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제52조(예정가격 결정시의 세액합산 등) ①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예정 가격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개별소비세 <개정 2016.7.22.>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4. 관세법에 의한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②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예정가격은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1항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7.22.>

③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은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로 합산한다. <개정 2011.4.6., 2016.7.22.>

제53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율은 다음 각호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 100분의 6

2. 음식료품의 제조, 구매 : 100분의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 구매 : 100분의 8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 구매 : 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 구매 : 100분의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 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 광물제품의 제조, 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 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 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기타물품의 제조, 구매 : 100분의 11

12.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개정 2016.7.22.>

13. 시설물 관리, 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신설 2016.7.22.>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신설 2016.7.22.>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 <신설 2016.7.22.>

16. 장비 유지·보수 용역: 100분의 10 <신설 2016.7.22.>

17. 그 밖의 용역: 100분의 6 <신설 2016.7.22.>

②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이윤율은 다음 각호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구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한다) : 100분의 25 <개정 2016.7.22.>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을 제외한다) : 100분의 10 <개정 2016.7.22.>

제3절 일반경쟁입찰

제54조(입찰참가자의 자격)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삭제 <2016.7.22.>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3.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개정 2016.7.22.>
4.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자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그 물품을 제조·구매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7.22.>

제55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제5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은 관계기관에서 발행하는 문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자는 등록된 종목(품종)에 한하여 그 기관에서 발행한 일반경쟁참가자격 등록확인으로 제1항 규정에 의한 자격의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6.>

제56조(입찰참가자격등록) ① 계약담당은 입찰사무의 간편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자격서류의 제출로써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등록하게 하기 위하여 연1회 내지 12회로 구분하여 추가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미리 그 뜻을 명시하여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의 게시,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신청 마감시까지 입찰참가자격 요건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57조(입찰참가자격요건 증명서류의 확인) ① 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 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계약담당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입찰참가자격요건 등의 배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6.>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할 경우
2. 수입(收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제60조(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①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제6항에 해당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②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2016.7.22.>

④계약담당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6.7.22.>

1. 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
2.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
3. 제1항 및 제2호의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7.22.>

제61조(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8.12.5., 2016.7.22.>

②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중 내용 오류 등의 사유로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5.>

③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④공사입찰중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5.>

⑤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5., 2009.12.30.>

1.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경우 40일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12.5., 2016.7.22.>

1. 제72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⑦제105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신설2009.12.30., 2011.4.6.>

1.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6.7.22.>
2. 추정가격이 규정 제2조에 따른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의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6.7.22.>

⑧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2의2.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22.>
3.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4. 현장설명회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공사입찰의 경우에 한함)
- 4의2. 제105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22.>
5. 입찰신청마감 및 입찰의 일시 및 장소
6.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8. 낙찰자 결정방법(제17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개정 2016.7.22.>
9.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10의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신설 2016.7.22.>
11. 우편입찰을 허용하는 경우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장소
12.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 12의2. 제120조의2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22.>
13. 삭제 <2016.7.22.>
1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2조(입찰참가신청) ①계약담당은 일반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일 전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자격요건 증명서류
3. 기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신청인이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 및 기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 마감일은 입찰일 전일로 한다.

제63조(입찰보증금) ①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금액(단가입찰의 경우에는 입찰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7.22., 단서 신설 2020.11.26.>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담당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감독원에 귀속한다. <신설 2016.7.22.>

③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방법에 관하여는 제19조 제5항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6.7.22.>]

제64조(입찰보증금의 납부면제) ①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자<개정 2021.6.1.>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개정 2016.7.22.>

2의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6.7.22.>

3.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5조(입찰서류의 작성 및 승락) ①계약담당이 작성해야 할 입찰에 관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5. 공사입찰의 경우 다음의 목록

가. 설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나. 공중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및 그 물량에 대한 단가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설명서

다. 제17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계약의 경우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신설 2016.7.22.>

6. 용역입찰의 경우 과업지시서

6의2.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105조 제3항에 따른 계약체결기준(세부기준을 포함한다) <신설 2016.7.22.>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숙지하게 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66조(입찰방법) ①계약담당자는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1인 1통에 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입찰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약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원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1.1.1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외국인의 경우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

제66조의2(입찰서의 제출·접수)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117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2.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본조 신설 2016.7.22.>

제67조(공사의 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그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은 공사규모에 따라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7.22.>

1.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일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경우 33일

④삭제 <2016.7.22.>

⑤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6.7.22.>

⑥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그 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⑦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총공사를 기준으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⑧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 제6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계약담당자가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량내역서를 열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7.22.>

⑨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지형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현장설명일에 공사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7.22.>

제68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①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6.7.22.>

③물품의 제조·구매 등의 입찰의 경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④장기물품제조 또는 구매 등의 경우에는 총제조 또는 총구매량 등을 기준으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제69조(2단계 경쟁입찰) ①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7.22.>

1. 청소용역
 2. 검침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따르지 않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계약담당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용역
- ②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제1항에서 정한 단순노무용역계약은 제외한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④계약담당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부대입찰) 삭제 <2016.7.22.>

제71조(입찰의 무효)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3의2.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신설 2016.7.22.>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개정 2016.7.22.>

4의2. 제10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신설 2016.7.22.>

5. 삭제 <2016.7.22.>

5의2. 제105조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정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신설 2016.7.22.>

6.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6의2. 제56조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신설 2016.7.22.>

가. 업체명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모두를 말한다)의 성명

7.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당해 물품의 품질, 성능, 효율 등이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8. 삭제 <2016.7.22.>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입찰이외에 계약담당이 정한 입찰유 의서에 위반된 입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2016.7.22.>

제72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73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개찰은 공고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출석한 자리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자로서 개찰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임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일단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 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 없다.

③계약담당은 입찰서를 지정된 일시까지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선언을 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은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입찰에 부치거나 기술과 가격을 동시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개정 2016.7.22.>

⑤계약담당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 단서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은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적격자가 2명(제17조 제6항에 따른 공사의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명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1.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2. 제17조 제2항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계약의 경우 :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3. 제69조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인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4. 제17조 제6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 점수가 높은 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의 규모·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⑦제6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을 하게 할 수 있다.

⑧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신설 2016.7.22.>

제4절 제한경쟁입찰

제74조(제한경쟁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제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4.6.>

1. 추정가격이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개정 2016.7.22.>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그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개정 2016.7.22.>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삭제>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그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 실적

6. 추정가격이 다음 각목의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가.공사의 경우에는 고시금액(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7억원) <개정 2016.7.22.>

나.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의 경우에는 고시금액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8. 계약당당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

9.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신설 2016.7.22.>

10.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신설 2016.7.22.>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만 해당한다)한 자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제75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①계약당당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이행의 난이,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계약당당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동조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74조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제74조제7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조 각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7.22.>

③계약담당은 제74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 또는 용역등의 실적 또는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또는 시공능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7.22.>

1. 공사·제조 또는 용역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실적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등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의 1배

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2배

④제7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공사의 현장,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2020.11.26.>

⑤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 간은 종전의 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6.7.22.>

⑥제3항의 추정금액이란 공사에 있어서 제2조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감독원이 제공할 재료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7.22.>

제76조(제한기준의 공고) ①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공사입찰로서 제7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입찰 참가 적격자에게 제61조 제8항 각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7.22.>

제77조(일반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한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제58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일반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지명경쟁입찰

제78조(지명경쟁입찰집행기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1.4.6.>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개정 2016.7.22.>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 또는 매각할 경우
4.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이하인 물건을 임대 또는 임차할 경우
5.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6.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7. 삭제 <2016.7.22.>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개정 2016.7.22.>
9.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제79조(입찰참가자의 지명기준) ①제78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1. 공사 :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75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명한다..

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한다.

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관서 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를 지명한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기준을 명백히 하고 지명경쟁입찰 참가자로 지명된 자로 하여금 그 지명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0조(유사물품의 복수경쟁) 계약담당은 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81조(입찰자의 지명) ①계약담당은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입찰 참가 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명 미만일 경우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경우에 제61조 제8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각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제82조(일반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일반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

제83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집행기준) ①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그 매각수량의 범위안에서 수요자의 매수희망수량과 그 단가에 대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②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때에는 그 수요수량의 범위안에서 공급자의 공급희망수량과 그 단가에 대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 물품을 구매하거나 제조하게 할 경우
2. 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 물품을 매각할 경우
3. 수인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 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

제84조(2종이상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계약담당은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85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의 입찰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이라는 뜻
2. 제61조 제8항 각호의 사항 <개정 2016.7.22.>
3.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86조(예정가격 결정) ①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은 물품의 단가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지출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구매 또는 제조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그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제87조(낙찰자의 결정) ①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물품의 구매 또는 제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가의 입찰자 중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물품의 매각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단가의 입찰자중 최고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매각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낙찰자가 될 같은 가격의 입찰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같은 때에는 제73조 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입찰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8조(희망수량경쟁입찰 입찰보증금의 귀속) 최후 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감독원에 귀속시키는 경우 그 낙찰자의 낙찰수량에 대하여 제87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 때에는 그 낙찰된 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감독원에 귀속시킨다.

제7절 수의계약

제89조(수의계약의 집행기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할 수 없는 공사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거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내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3.1.31., 2016.7.22.>

마.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

2.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할 수 없는 물품의 제조 및 구매

가.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다만, 일정한 규격 및 내용을 제시하여 제조하게 할 수 있거나 다른 물품의 구매로도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6.7.22.>

나.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로써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 삭제 <2016.7.22.>

라.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그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3.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할 수 없는 용역 등

가.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훈련, 시설관리 또는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의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나. 특정인의 토지·건물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을 개발(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공급한 자가 직접 그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기능개선 등의 추가개발을 포함한다)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16.7.22.>

4.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개정 2008.1.19., 2020.11.26.>

5. 감독원 방호계획, 보안시설물의 관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계약 행위 및 그 내용을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정 2016.7.22.>

6.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

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개정 2008.1.19., 2016.7.22., 2020.11.26.>

7.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계약에 있어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개정 2008.1.19., 2016.7.22.>

7의2.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6.7.22., 2020.11.26.>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95조 제1항 단서 중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나. 학술연구, 원가계산,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신설 2020.11.26.>

7의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신설 2016.7.22.>

8.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계약을 할 경우 <개정 2011.4.6.>

9. 삭제 <2016.7.22.>

10. 해외근무직원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할 경우

11. 물품의 가공, 하역, 운송 또는 보관을 함에 있어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할 경우

12. 삭제 <2016.7.22.>

13. 삭제 <2011.4.6.>

14. 삭제 <2016.7.22.>

1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1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17. 삭제 <2016.7.22.>

18.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와 제조·구매하는 경우 <신설 2000.1.1.>

19. 삭제 <2016.7.22.>

20. 유가증권을 한국거래소, 금융투자업자,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매각하거나 매각을 위탁할 경우 <신설 2000.1.1., 2011.4.6.>

21.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신설 2000.1.1.>

22. 「증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증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제조·구매하는 경우 <신설 2000.1.1., 개정 2011.4.6., 2016.7.22.>

22의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해당 물품을 인증 또는 지정한 날부터 3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이 유효한 기간만 해당한다.)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과 연장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6.7.22.>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개정 2020.11.26>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11.26.>

23. 삭제 <2016.7.22.>

24.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파견근로자 등(감독원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한정한다)을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하는 감독원이 설립한 회사와 해당 파견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설 2021.6.1.>

25. 제1호부터 제24호 이외에 계약의 목적, 성질, 비용절감 또는 관리의 효율화 등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신설 2000.1.1., 제24호에서 이동 2021.6.1.>

제90조(재공고입찰 또는 재지명입찰 결과 유찰시 수의계약) ①재공고입찰 또는 재지명입찰에 부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또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

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예정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가.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입찰자의 순서에 의한다.

나. 입찰 참가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입찰 참가자

다. 재공고 및 재지명 입찰 참가자가 없거나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초 입찰 참가자중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입찰자의 순서에 의한다.

라. 기타 입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업체

2.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우

가. 예정가격 이하의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입찰자의 순서에 의한다.

나. 입찰 참가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입찰 참가자

다. 재공고 및 재지명 입찰 참가자가 없거나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초 입찰 참가자중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입찰자의 순서에 의한다.

라. 기타 입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업체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초 경쟁입찰에 부칠 때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 조건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하여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4조 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72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1.26.>

제91조(낙찰자의 계약불체결 등과 수의계약) ①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9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2조(희망수량경쟁입찰과 수의계약)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때에는 물품의 구매나 제조에 있어서는 그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내에서, 물품의 매각에 있어서는 그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3조(분할수의계약)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

액을 분할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제94조(직전 시공자와의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①제89조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속공사에 있어서 그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공사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그 공사에 관련된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5조(견적서의 제출요구) ①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89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16호, 제24호, 제25호(복수 견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제89조 제7의2호 다목 및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6.7.22., 2020.11.26., 2021.6.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5.>

1.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 구매, 임차 및 용역계약

③계약담당은 제89조 제7의2호, 제7의3호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89조 제7의2호 다목 및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자산총괄담당자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6.7.22., 2020.11.26.>

제96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①계약담당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안에 들지 아니한 경우(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에 미달한 때,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7조(부정당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 계약담당은 이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와 그 제한기간 동안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2.4.>

제98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계약담당은 제89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11호, 제15호, 제18호, 제21호, 제22호, 제22의2호 가목부터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제99조(일반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4조 제1항 및 제55조의 규정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6.7.22.>

제8절 계약의 특례

제100조(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①임대차·운송·보관·기타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한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하게 하여야 한다.

제101조(장기계속계약) ①사업의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일 경우 및 가격의 안정과 물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계약은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또는 운송, 보관, 시험, 조사, 연구, 측량, 시설, 관리 등의 용역 계약
2.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개정 2016.7.22.>

③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그 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④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체결 방법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 총제조 등의 계약 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제67조 제6항, 제110조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2조(단가계약)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해의 예산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3조(개산계약) ①시험, 조사, 연구용역계약,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위탁 또는 대행계약,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에 있어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7.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가격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04조(공동계약) ①공사, 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④계약담당은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계약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05조(협상에 의한 계약) ①물품·용역계약은 그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 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④계약담당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6.7.22.>

⑤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7.22.>

⑥계약담당은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정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7.22.>

제105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계약담당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05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고난도 또는 고기술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6.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개정 2020.11.26.>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그 밖에 계약담당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은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7.22.>

제105조의3(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계약담당은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45조 및 제2항의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7.22.>

제105조의4(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계약담당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7.22.>

제9절 보증금 납부절차 등

제106조(보증금의 납부시기와 반환시기) ①보증금의 납부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보증금 : 입찰신청 마감전까지
2. 계약보증금 : 계약체결전까지
3. 하자보수보증금 : 공사대가의 최종 지출시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은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정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정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7조(입찰보증금의 대체납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이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정리하여야 한다.

제108조(계약금액 변경시의 보증금 납부)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계약보증금이 증액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9조(유가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제19조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이하 "유가증권"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때에는 그 종류, 액면, 기호, 번호, 장수 등과 상장유가증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등록국채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국채등록필통지서와 함께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등록필통지서와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질권설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주식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그 주식에 대한 양도증서 및 그 진위에 관한 책임부담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일 것
2.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그 주식 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이 있을 것
3. 발행회사가 상이한 수종의 주식을 제출한 때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양도증서 일 것

⑤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제19조 제5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에금증서 또는 수익증권(이하 "정기에금증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에금증서등과 함께 그 예금에 대한 양도증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질권설정 조치를 취한다.

제110조(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절차) 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제19조 제5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 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1. 피보증인의 명의를 감독원으로 할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이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 가. 입찰보증금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이후일 것
 - 나. 계약보증금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개시일 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 다.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4.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같은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5.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감독원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이 있을 것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1조(보증서 등의 관리) 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제19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한 때에는 이를 회계규정의 규정에 의한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한 때에는 이를 견고한 용기내에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8.12.4.>

제112조(보증기간중의 의무) 계약담당은 보증기간중 보증보험계약 등의 약관, 특약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상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2. 상법 제6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3. 상법 제68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방지의 의무
4. 약관의 규정에 의한 조사승락의 의무
5. 기타 약관 또는 특약에 특히 정한 의무

제113조(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기간 연장) 계약담당은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에 그 연기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1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절차) ①하자보수보증금이 현금일 경우에는 예수보증금계정에서 하자보수의 대가로 직접 지급한다.

②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보험증권 등일 경우에는 그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이를 예수보증금계정으로 정리한다.

③하자보수보증금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금융투자업자,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

용기관 또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위탁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위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한 후 그 잔액을 예수보증금계정으로 정리한다. 다만, 그 상장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채권의 최종원리금 상환 기일이 매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11.4.6.>

④하자보수보증금을 제19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에금증서로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즉시 취급 금융기관에 현금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예수보증금계정으로 정리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수보증금계정으로 정리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의 대가로 지급한다.

⑥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을 위하여 예수보증금계정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상장유가증권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⑦하자보수의 대가를 전부 지급하고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감독원에 귀속처리 하여야 한다.

제115조(보증금의 귀속절차) ①계약담당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보수불이행 등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금을 감독원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통지하고 그 보증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현금의 경우에는 수입금으로 징수 조치한다.

2. 제1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감독원의 소유 유가증권으로 조치한다.

3. 보증보험증권 등의 경우에는 관계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수입금으로 징수 조치한다.

4. 정기에금증서 등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 조치한다.

②삭제 <2016.7.22.>

③면제 등 사유로 보증금을 미징수한 경우 제1항의 보증금 귀속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증금 납부를 고지하고,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2.>

제10절 보칙

제116조(지명경쟁과 수의계약 승인기준) 계약담당이 제7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계약 또는 제89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11호, 제14호, 제24호 및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1., 2021.6.1.>

1. 계약의 목적

2. 품명, 규격, 수량

3. 단가, 금액 및 산출기초(수의계약에 한함)

4. 소요예산 및 예산집행과목

5. 적용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6. 지명 또는 계약상대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면허 등의 번호, 성명 및 업태상황

7. 계약서안

8. 기타 참고사항

제117조(국제입찰) 계약담당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8조(국제상관습의 적용 등) 계약담당은 국제입찰 등에 의한 국제계약에 있어서 통화, 보증금 납부형태 및 시기, 신용장 등에 의한 대가지급방법 및 검사 등 조달절차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규정 등에 불구하고 국제 상관습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8.12.4.>

제119조(계약실적보고) <삭제>

제119조의2(계약관련 정보 공개) ①자산총괄담당은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을 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 제1항 제5호 등 계약담당자가 공개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산총괄담당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내용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된 사실을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7.22.>

제120조(정부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 또는 감독원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규칙, 예규, 해석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4.>

제120조의2(대형공사계약 등) 계약담당은 대형공사계약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하며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2. “특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계약담당자가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대안입찰”이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4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4. “대안”이란 기존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기술,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 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기존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도 단축하여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5. “일괄입찰”이란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16.7.22.>

제120조의3(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등) 계약담당은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하며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감독원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 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감독원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감독원이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16.7.22>

제4장 차량유지비 [본장신설 2000.1.1.]

제121조(차량유지비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부서장, 부서에 속하는 실의 장 및 기타(실장급) 직원(이하 '자가운전자'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및 동거중인 직계존비속의 소유 또는 임차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을 포함한 제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차량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차량유지비'라 한다)으로 월 30만원(일수계산시 일 1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16., 2008.12.5.>

② <삭제>

③ 차량유지비 지급신청, 지급중지 및 자동차종합보험 부보에 대하여는 자산총괄담당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보칙

제122조(위임)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산총괄담당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12.4>

부 칙 <1999.1.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9.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은행감독원의 자산관리세칙, 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의 회계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으로서 이 세칙에 규정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세칙 시행전에 금융감독원설립위원회가 감독원 설립과 관련하여 처리한 각종 자산관리 및 계약업무는 이 세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1.1>

이 세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6>

이 세칙은 200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3.11>

(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2.13>

이 세칙은 200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16>

이 세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8.7>

이 세칙은 2006. 8.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9>

이 세칙은 200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4>

이 규정은 200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5>

이 규정은 200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30>

이 규정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4.6>

이 규정은 201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6제1항제6호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7.22.>

이 규정은 2016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26.>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5.18.>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26.>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1.>

이 규정은 2021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08.12.4., 2008.12.5., 2013.1.31., 2016.10.26., 2018.5.18., 2020.11.26.>

자산관리 및 계약업무 위임에 따른 담당직지정

구 분	담당 직무	담당 직
1. 자산관리업무		
가. 공구기구비품(각부서에서 사용하는 전산기기 포함) 및 부외자산관리업무	자산관리담당	각부서장
나. 도서관리업무	"	거시건전성감독국장
다. 각부서에서 사용하는 전산기기를 포함한 전산 시스템 및 동 기자재 등의 전반적인 관리업무	"	정보화전략국장
라. 기타 업무	"	총무국장
2. 계약업무		
가. 수입에 관한 계약업무	계약담당	각부서장
나. 지출에 관한 계약업무		
① 각부서 자체예산사업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물품 구매에 관한 계약. 다만 경쟁입찰에 의하여야할 경우는 제외	"	"
② 각부서의 고유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문용역계약 및 전문성을 요하는 특수물품의 구매, 관리 및 처분등에 관한 계약	"	"
③ 직원을 제외한 고용에 관한 계약	"	"
④ 도서구매 및 관리 계약	"	거시건전성감독국장
⑤ 전자계산시스템 및 동 기자재의 구매, 임차, 관리에 관한 계약	"	정보화전략국장
⑥ 무선통신시설 및 동 기자재, 총기류, 소화기, 실탄, 예비군 및 민방위 등 안전관리 관련물품의 구매, 관리, 처분 등에 관한 계약	"	안전계획실장
⑦ 기타 계약	"	총무국장

* 각부서장이 담당하는 자산관리업무 또는 계약업무가 지원 또는 해외근무자의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장 또는 해외근무자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